

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임위원수 : 3인

나. 선임대상자

의원 (대표위원) : 우충국 의원

의장 추천자 : 농협양주군지부 차장 이경상

주내단위농협 전무 손영우

【 13 】 양주군의회 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

제의년월일 : 1993. 7. 21.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를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안의 자구정리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함. (안 제26조)

나.. 정리할 수 있는 범위중 문구를 자구로 조정함. (안 제26조)

양주군의회 규칙 제 호

양주군의회 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

양주군의회 회의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증 “문구”를 “자구”로, “의장 또는 위원회에”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안의 정리)본회의는 의안의 의 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 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 에는 이를 <u>의장 또는 위원회에</u> 위임 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자 구 <u>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u> <u>공무원에게</u>

【 14 】 휴회의견

제의년월일 : 1993. 7. 24.

제 의 자 : 의 장

주 문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함.

제안이유

양주구수가 채출하 19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